

'99 농림사업 시행지침

농림부는 "99년 농림사업 시행지침"을 마련하여 각 시·군 등에 시달함에 따라 본지에서는 낙농인들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시행지침 중 축산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. 이에 낙농육우농가에서는 많이 참조 하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각 시·군청이나 협회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- 편집자주 -

축산경쟁력 강화사업(자율)

I. 조사료생산 기반확충

1. 시행 및 추진방향

- ◆ 초식가축(한우·젖소 등)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
- ◆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
- ◆ 벗짚 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
- ◆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
- ◆ 청초기 산풀베기운동 추진

2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95~96 | 97 | 98(예산) | 99 | 2000 | 2001~2004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총사업비 | 61,600 | 63,333 | 63,333 | 49,429 | 57,143 | 228,572 |
| 보 조 | 19,700 | 19,000 | 20,000 | 18,000 | 20,000 | 80,000 |
| 융 자 | 17,900 | 19,000 | 20,000 | 22,000 | 20,000 | 80,000 |
| 지 방 비 | 8,500 | 9,500 | 9,500 | - | - | - |
| 자 부 담 | 15,500 | 15,833 | 15,833 | 9,429 | 17,143 | 68,572 |

* 지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(이미 추진된 사업 실적 포함)의 가액은 제외됨.

3. '99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지원사업

- ◆ 기반시설: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개설·용수개발·전기시설·부지정지·목책시설 및 진입로개설사업

◆ 조사료생산: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·기성초지보완 및 사료작물재배사업(답리작 포함)

◆ 벗짚 등 사료화: 생벗짚등 곤포 silage제조사업, 벗짚(보릿짚)암모니아처리 사업

◆ 장비 및 기타: 조사료생산장비, silo시설, 조사료물류유통기지지원사업 등

◆ 청초기 산풀베기운동: 산풀베기운동 참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

나. 지원대상

◆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

◆ 영농조합법인: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

◆ 협업체: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~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(운영규정)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

※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하며 구성원중 70%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

◆ 농업회사법인, 2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(생벗짚등 곤포 silage제조사업에 한함)

◆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
다. 지원 규모 및 조건

◆ 지원규모

〈표 1〉 세부사업별 지원기준

| 세부사업별 | 지원비율(%) | | | 지원 단 가 |
|---|---------|----|----|---|
| | 지방비 | 보조 | 용자 | |
| 목록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영구 хр체시설 진입로 개설 | | 70 | 30 | km당 45백만원(노폭 4m) 공당 30백만원 km당 5.5백만원 ha당 5백만원 ha당 3백만원 km당 100백만원, 선별적 지원(노폭 4m, 포장 3m) |
| 초지초성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(보조지원사업분) 볏짚암모니아처리 | - | 50 | 50 | 별도시달 |
| | | 50 | - | 종자·비료대 실소요액 ※ 권장사업분은 자력추진 암모니아gas 주입비 소요액 ※ 비닐구입은 자담 |
| 생벽짚등 곤포silage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사료 생산장비 장비보관창고 silo시설 조사료 물류유동기지 | - | - | 70 | 30 |
| | | | | 대당 5백만원 50평이내 (평당 30만원) 1기(50톤)당 5백만원 개소당 2,000백만원 |

- ① 지원단가는 상한액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
- ② 용지조건 : 연리5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- ③ '99년 실제 적용할 지원 단가는 필요시 별도로 정함
- ④ 부지구입비는 자부담

-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지원분(경쟁력강화 사업등)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
- 개별농가(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) : 3억원 이내
-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%이내,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◆ 지원조건

- 보조 및 용자등 지원비율은 〈표 1〉의 「세부사업별 지원기준」에 따라 차등 적용
-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함
- 용자조건 [용자기간 : 15년(5년거치 10년 균분상환)
금리 : 연 5%]
- 산불예기 : 보조 100%, 1인당 1일 8시간 기준 22,000원

라. 사업 시행체계

◆ 사업신청(사업희망자→시·군)→사업타당성 검토(시·군)→사업내용검토 및 심의(시·군, 시·도 농발위)→대상자 선정(시·군, 시·도)→시·도예산 배정(농림부)→시·군예산배정(시·도)→대상자 확정 및 통보(시·군, 시·도)→사업대상자(농가)

4. 2000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

나. 신청자격

◆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

◆ 영농조합법인 :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

◆ 협업체 :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~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(운영규정)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

※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%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

◆ 농업회사법인, 20ha이상의 쌀 전업농(생벽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)

◆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
다. 신청절차

◆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(공통서식)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
라. 구비서류

◆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 서식)

◆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
마. 선정 우선순위

〈농가〉

◆ 초지·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자

◆ 초지·사료포부지를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·단지화할수 있는자

◆ 담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

◆ 한우 및 젖소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자

◆ 20ha 이상 규모의 쌀전업농(생벽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)

〈협업체·영농조합법인·축협조합〉

- ◆ 조사료생산사업단,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
- ◆ 초기·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
- ◆ 농업회사법인(생별짚등 곤포 silage제조사업에 한함)
- ◆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
- ◆ 공동구매·판매,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·법인 및 조합
- ◆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·법인 및 조합
- ◆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·법인 및 조합
- 바. 선정절차
 - ◆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·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
 - 사. 사업담당부서
 - ◆ 농림부: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
 - ◆ 시·도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정계)
 - ◆ 시·군·자치구: 축산과 또는 농산과(축산계)

II. 축산분뇨처리시설

1. 시책 및 추진방향

- ◆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·액비로 자원화 하되,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
- ◆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 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(한강·낙동강·영산강·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등)
- ◆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(이하 "오분법")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대상 농가에 우선 지원
- ◆ 기설치된 농가의 노후기계설비 보완 및 4대강 유역의 특정지역내 소규모 농가에 축산분뇨시설 지원
- ※ 오분법에 의한 특정지역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에서는 모든 축사시설자금의 신규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(단,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 시설자금은 우선지원)

2. 연도별 지원계획

| 구 분 | 92~95 | 1996 | 1997 | 1998(P) | 1999 | 2000~2004 |
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사업비 | 36,678 | 9,696 | 5,389 | 4,662 | 5,000 | 25,000 |
| | 계 | 330,062 | 135,300 | 158,250 | 170,375 | 117,250 |
| | 보조 | 119,715 | 59,050 | 81,125 | 88,188 | 61,625 |
| | 용자 | 177,236 | 59,180 | 46,275 | 49,312 | 33,375 |
| | 자부담 | 33,111 | 17,070 | 30,850 | 32,875 | 22,250 |
| | | | | | | 153,425 |

3. 1999년도 사업시행요령

- 1) 사업대상지역
 - ◆ 4대강(한강·낙동강·영산강·금강) 유역의 특정 지역 및 새만금지역
 - ◆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,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
 - ◆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
 - ◆ 나원자 정착촌(농원) 지역

2) 사업대상자

(가) 단독(개별)시설

- ◆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
 -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
- ◆ 축산분뇨시설을 1990. 12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
- ◆ 4대강(한강·낙동강·영산강·금강) 유역의 특정 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농가
 - (나) 공동시설·톱밥제조시설등
- ◆ 축산단지, 축산계역사업체(소·돼지·닭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(톱밥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)
 - 공동시설은 1990. 12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 대상 포함
- ◆ 나원자 정착촌구조개선
- ◆ 나원자 정착촌의 법인체·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
 - 법인체·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,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

3) 사업내용

(가) 단독(개별)시설

- ◆ 퇴비·액비화시설 : 축분발효시설(건조식·통풍식·교반식등), 저장액비화시설, 퇴비화 건조장
- ◆ 정화방류시설 : 활성오니법시설, 산화구법시설, 텁밥토양여과법시설(간이정화조 설치대상에 저류조 시설 포함)
- ◆ 부대 기계·장비 : 소형·이동식 텁밥제조기·파쇄기, 왕겨분쇄기·왕겨팽연화장비, 액비운반탱크, 스키드로다(트랙타·경운기등 운반장비 제외)
- (나) 공동 시설

- ◆ 부산물비료(축분퇴비)시설 : 축분발효시설(건조식·통풍식·교반식등), 공동저장액비화시설, 공동퇴비사

- ◆ 정화방류시설 : 오분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

- ◆ 부대 기계·장비 : 바콤카·압롤카·살포차량
- (다) 정착촌구조개선 :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(가)단독시설 또는 (나)공동시설

- (라) 텁밥제조기설등 : 공동시설공급용 텁밥제조시설, 이동식 텁밥제조기

(마) 지원규모 및 조건

- (1) 축종별 축사 m^2 단위당 사업비(자부담분 포함)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
- 축종별 축산 m^2 단위당 사업비단가(조정시 별도 통지예정)

| (단위: 천원/ m^2)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|-----|--|
| 축 종 | 돼 지 | 한·육우 | 젖 소 | 닭 | | |
| | | | | 평사 | 케이지 | |
| 단 가 | 74 | 30 | 33 | 21 | 34 | |

※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(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등 축사 신·증축계획면적 포함)

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

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^2 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

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

- ⑤ 노후기계설비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% 범위내에서 노후기계 설비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

(2)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(자부담분 포함)

(단위: 백만원/개소)

| 구 분 | 돼지 | 한우 | 젖 소 | 닭 | |
|-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--|
| | | | | 평사 | 케이지 |
| 개별시설 | 300 | | | 200 | |
| 공동시설 | 1,500 | | 800 | | 1,000 |
| 톱밥제조시설 | | | | 150 | |

(3) 지원조건

- ◆ 단독시설·공동시설·톱밥제조시설

- 지원비율 : 보조 50%이내, 융자 30%이내, 자부담 20%이상

- 융자조건

· 융자기간 : 10년(3년거치 7년균분상환)

· 금리 : 연 4.5%

· 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)

- ◆ 정착촌구조개선 : 보조 100%

(4) 부대 기계·장비의 개소당 한도액(자부담분 포함)

- ◆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: 10백만원이내

- ◆ 축산분뇨 운반장비 : 30백만원이내

※ 축산분뇨퇴비처리 및 운반장비는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

(5) '99 사업비 계획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| 세부사업별 | 사업량 | 사업비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지원예산액(농특회계) | 자부담 | 계 |
| 개별·공동시설 | 4,980 | 54,875 | 32,925 | 87,800 |
| 정착촌구조개선 | 10 | 6,000 | | 6,000 |
| 톱밥제조시설·이동식톱밥제조기 | 10 | 750 | 450 | 1,200 |
| 합 계 | 5,000 | 61,626 | 33,375 | 95,000 |
| | | | 22,250 | 117,250 |

4.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

- ◆ 단독시설 : 시·군·자치구(축산담당부서), 읍·면

- ◆ 그외 시설 : 시·군·자치구 경유 시·도

나. 신청자격

(1) 단독(개별)시설

- ◆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

농가

- ◆ 축산분뇨시설을 1991, 12월 이전에 설치할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
- ◆ 4대강(한강·낙동강·영산강·금강) 유역의 특정 지역과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농가
- (2) 공동시설·톱밥제조시설
- ◆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체(소·돼지·닭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(톱밥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)
- ◆ 공동시설은 1991, 12월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 대상 포함
- (3) 정착촌구조개선
- ◆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 또는 축산농가

다. 신청절차

(1) 단독시설

- ◆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·군 또는 시·도에 구성된 「축산분뇨기술자문단」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999. 1월말까지 시·군(또는 읍·면장을 경유 시·군)에 제출

(2) 공동시설·정착촌구조개선·톱밥제조시설등

- ◆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·군 또는 시·도에 구성된 「축산분뇨기술자문단」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을 경유하여 1999. 2월말까지 시·도에 제출

라. 지원조건

- ◆ 대상사업: 단독시설·공동시설·정착촌구조개선·톱밥제조시설
- ◆ 지원비율: 보조 30%, 융자 70%
- ◆ 융자조건
 - 융자기간: 10년(3년거치 7년균분상환)
 - 금리: 연 4.5%

마. 구비서류

- ◆ 농림사업실시규정 제 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과 첨부서류(시·군 또는 시·도에 구성된 「축산분뇨기술자문단」의 사업계획검토의견서 추가)
 - 사업희망자는 시·군(시·도)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, 신용조사서,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

료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

- 바.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·신고기관
- ◆ 중앙: 환경부 생활오수과(02-504-9255, 500-4296~7)
- ◆ 시·도: 환경담당부서
- ◆ 시·군: 환경담당부서

축산단지조성사업(공공)

1. 시책 및 추진방향

- ◆ '98년도까지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성중에 있는 기존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보완사업만 추진
 - 신규단지 조성사업은 중단('99~2000년)
- ◆ 기존축산단지에 대하여 사양관리기술·방역·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영개선 도모

2. 연차별 지원계획

(단위: 억원)

| 구 분 | 95까지 | 96 | 97 | 98 | 99예산안 |
|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사업량 | 83개소 | 71 | 77 | 30 | 16 |
| 사 | 계 | 2,721 | 880 | 1,007 | 408 |
| | 기금보조 | 220 | 61 | 70 | 43 |
| 업 | 기금융자 | 1,791 | 553 | 627 | 139 |
| 비 | 지방비 | 145 | 50 | 34 | 26 |
| | 자담 | 565 | 216 | 276 | 200 |
| | | | | | 97 |

3. '99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(1) 지원내용

- ◆ 기반시설: 부지정지, 진입도로, 목도, 용수개발, 전기인입시설 등
- ◆ 건물설치: 축사, 창고, 인공수정실 등의 건물시설
- ◆ 기계·기구: 축산물생산(사료급이기·급수기등), 운반처리용차량, 기계·기구, 환기·온도·습도 등 환경조절시설, 가축방역용 장비류등
- ◆ 기타시설: 가축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
 - ※ 가축구입비, 부지·건물구입비, 사료비, 임차료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(2) 지원대상

- ◆ 대상축종: 한우, 돼지, 닭

◆ 사업대상자

- 이미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 지정된 단지 또는 기조성이 완료된 단지로서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

필요한 자

-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단지 (지원 기준은 축산종합자금제외 시설사업 참조)
- 교접우를 한우로 대체입식하고자 하는 자(제주도에 한함)
※ 재해(농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) 또는 그외의 사고로 인하여 축사 등 피해를 입은 농가(다만, 법령에 의한 재해대책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함)는 상기 순위보다 우선지원 가능
- 단지구성원 : 한우는 3호이상, 10호 이내인 단지
(3) 사업기간 : '99~2000년
(4) 지원규모 및 조건

◆ 지원액

- 협업체 : 단지구성원당 3억원이내
- 영농조합 : 자기자본의 200% 이내
- 축협조합 : 자기자본의 400% 이내
- ◆ 지원비율 : 축산단지 지원기준 참조(별표1) 지원조건(융자) :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, 연리 5%
- 다. 사업시행
(1) 사업계획수립
- ◆ 보완사업계획(기존시설물이 현저히 노후 또는 부족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시설의 증·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)신청시 사업대상 토지는 단지구성원이 자체로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었거나 매매계약서등 부지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법적제한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않는 지역으로 확인되어야 함.
- 시설노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또는 시설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

- ◆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 기관은 추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할것(단, 재신청 시 대상자이외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)

- ◆ 사업규모는 자금능력, 경영능력, 축산분뇨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조성
- ◆ 단지 참여농가는 현재 사업현황과 자금부담능력, 담

보능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

- ◆ 단지내에서는 가급적 종축 또는 사료를 통일하여야 하며, 생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.
- ◆ 출입차량, 출입인의 소독 또는 통제시설, 방역시설과 자율방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
- ◆ 교접우의 한우 대체입식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수립·시행함
 - 사업량 : 1,000두
 - 두당단가 : 800천원(융자 550, 지방비 50, 자부담 200)

라. 사업담당부서

- ◆ 농림부 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), 축산물유통과(02-504-9436)
- ◆ 시·도 : 각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
- ◆ 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농산과

소산업정보화사업(공공)

1. 시책 및 추진방향

- ◆ 소 개체식별이 필요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및 소를 대상으로 개체식별(ID)관리시스템 구축
- ◆ 가축개량, 사양, 위생, 방역등 각종 전산망들과 연계한 다양한 축산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2. 연도별 지원계획

| 구분 | 95 | 96 | 97 | 98 | 99(예산안)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사업량 | 2,530천두 | 1,180 | 1,180 | 826 | 260 |
| 사업비(보조) | 13,946백만원 | 12,024 | 12,709 | 6,603 | 1,551 |
| 축벌기금 | 13,946 | | | | 1,551 |
| 농특회계 | | 12,024 | 12,709 | 6,603 | |

3. '99년도 사업시행요령

- ◆ 사업량 : 260천두
- ◆ 사업내용
 - 정부시책 5개사업에 참여중인 소 및 이들이 생산한 암·수 송아지에 대하여 지정된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하여 사후관리 단,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, 특수가축공제사업, 종축등록사업의 차명우가 생산한 송아지는 제외
 - 지역축·낙협 담당직원이 조사표를 취합·확인하여 축협 금융 전산망(BBS)을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면 정보화 본부에서 취합하여 귀표장착비 지

원·정산

- 등급판정결과를 원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Feed-back시스템 구축

◆ 지원사업

- 바코드 귀표장착비 : 농가에서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숙달시까지 지역축·낙협 직원·한종협 직원·부락 또는 리·동 단위로 지정된 기자재 관리농가들은 해당농가의 요청에 의거 귀표를 장착할 수 있으며, 장착자들에게 두당 3,000원 지급
- ◆ 재원 및 지원조건 : 축산발전기금, 보조 100%
- 가. 사업담당부서
- ◆ 총괄 : 농림부 축산물유통과(02-504-9436~7)
- ◆ 중앙 : 한국종축개량협회 정보화본부(02-588-9301~5)
- ◆ 지방 : 지역 축·낙협(사업별 업무담당자)

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(공공)

1. 시책 및 추진방향

- ◆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
- ◆ 사업대상은 한우번식농가로서 한우암소
- ◆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참여농가 부담금 납부 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참여자의 일정률 부담금납부

2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96 | 97 | 98 | 99 | 200~6 | 계 |
|-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사업량 | - | - | 373천두 | (323천두) | (50천두) | (373천두) |
| 축 발 | | | 3,000 | 27,397 | 4,000 | 34,397 |
| 농 특 | | | - | - | - | - |
| 지방비 | | | 1,865 | 1,865 | - | 3,730 |
| 자부담 | | | 3,730 | - | - | 3,730 |

주) - '98사업량 1차분 16개 시범대상조합 : 184.5천두(조합당 11.5천두)
2차분 16개 시범대상조합 : 188.7천두(조합당 11.8천두)

3. '99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'99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

| 내용별 | 사업량 | 사업비(백만원) | | 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|
| | | 사업비 | | 예산액(축산발전기금) | | | 지방비 | 자부담 |
| | | 합계 | 계 | 보조 | 용자 | | | |
| 계 | 323천두 | 29,262 | 27,397 | 27,397 | - | 1,865 | - | |
| 관리비 | - | 1,521 | 1,521 | 1,521 | - | - | - | |
| 보전금 | 323천두 | 27,741 | 25,876 | 25,876 | - | 1,865 | - | |

나. 사업시행시기

시범사업기간 : '98.7.16~'99.12.31

다. 사업대상 : 32개 시·군(도별 4개소)

라. 자금조성 및 관리

◆ 조성

- 보전금재원별부담 : 국고 80%, 지자체 10%, 계약자부담 10%

◆ 관리

- 축협중앙회내『송아지생산안정제 특별회계지침』에 의거 운영

〈추진체계〉

가. 계약 및 추진절차

* 계약대상

◆ 계약대상자 : 시범사업 지역내 한우 암소 사육자
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(재)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 제외

◆ 계약대상우 :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

◆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= '99. 12월말까지

- 청약기간 : 1차분 : '98.7.16~10.31,

2차분 : '98.10.20~12.31

- 계약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축협

- 계약자 준비사항

- 계약자 부담금, 주민등록증, 도장, 축협통장

- 계약대상우의 바코드 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, 임신중이면 임신개월수, 임신예정우면 수정예정월을 기록하여 지참

* 송아지 생산신고

◆ 송아지 생산신고 : 생후 14일이내

◆ 신고기관 : 계약축협(전화 또는 구두)

* 송아지 생산확인 및 바코드귀표 부착

◆ 확인기관 : 지역축협

◆ 확인기간 : 송아지 생후 2개월이내(확인시 바코드귀표 부착)

- 조건 : 계약우와 송아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

나. 기준가격 등

* 안정기준가격

- ◆ 내용 : 송아지의 생산 여건 및 수급사정, 기타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단순재생산 기반을 확보·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격
- ◆ 결정 : 안정기준가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
- ◆ 공시 :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
 - * 시범사업기간중의 잠정적인 안정기준가격 : 700 천원

* 평균거래가격

- ◆ 내용 : 송아지의 시장 실제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격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가격
- ◆ 산출 : 농·축·수산물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에 매매된 4~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암·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
- ◆ 공시 : 축협중앙회장이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까지 천원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

*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: 100,000원/두당

- ◆ 시범사업 기간중 재원의 과다소요 방지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시·군의 농가와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계약생산송아지 두당보전금 지급상한선을 설정

* 계약자부담금 : 10,000원/두당

- ◆ 내용 : 사업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하는 금액
- ◆ 결정 : 안정기준가격의 1~3%범위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
- ◆ 공시 :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천원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

* 지급사유

- ◆ 계약자의 송아지 생산신고에 의거 바코드귀표부착 및 등록이 완료된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계약 당시의

안정기준가격 미만인 때

* 지급절차

- ◆ 축협중앙회장은 분기 송아지평균거래 가격 공고후 20일이내에 지역축협을 통하여 계약농가의 계좌에 보전금을 입금

* 지급액 = 지급대상두수 × (안전기준가격 - 분기 평균거래가격)

- ◆ 안전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
 - 다. 사업추진기관 및 담당부서
- ◆ 사업주관 :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(02-500-2691)
- ◆ 시행기관 : 축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단 (02-224-8078, 지역축협)

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 (공공)

<한우 전문판매점 설치>

- ◆ 지원대상 : 축협중앙회, 축협조합, 농협중앙회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, 한냉, 식육유통업체, 양축농가, 식육판매업소(신규 포함)등
- ◆ 사업량 및 사업비 : 87개소, 15,897백만원
 - 개소당 사업비 : 200백만원 (융자 140, 자담 60)
- ◆ 지원조건 : 연리 5~8%, 융자율 70%, 5년거치 10년상환
 - 연리 5% : 축협, 농협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, 한냉, 축산관련협회, 농가
 - 연리 8% : 민간 (식육유통업체, 식육판매업소 등)
- ◆ 자금용도 : 매장 건축·매입·임차료, 냉장육 판매, 보관, 가공, 인테리어비
 - 건축·매입·임차료는 사업비의 50%범위까지 인정(융자금의 50%까지 집행)
- ◆ 시설기준 : 판매장 면적 15평이상
 - 진열장 4m · 숙성실 3평 · 냉동실 1.5평이상, 냉장육절기
- ◆ 사업자 준수사항
 - 시설기준 준수(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%이상이어야 함)
 -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, 기타 농·

수·축산물은 국내산 판매

〈육우전문 판매점 설치〉

- ◆ 지원대상: 축협, 낙농관련 영농조합법인·협업체, 낙우회, 낙농농가
- ◆ 사업량 및 사업비: 14개소, 1,960백만원
- 개소당 사업비: 200백만원 (융자 140, 자담 60)
- ◆ 지원조건: 연리 5%, 융자율 70%, 5년거치 10년 상환
- ◆ 자금용도: 매장 건축·매입·임차료, 냉장육 판매, 보관, 가공, 인테리어비
- 건축·매입·임차료는 사업비의 50% 범위까지 인정(융자금의 50%까지 집행)
- ◆ 시설기준
 - 판매장 면적 15평이상
 - 진열장 4m·숙성실 3평·냉동실 1.5평이상, 냉장 육절기
- ◆ 사업자 준수사항
 - 시설기준 준수 (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%이상이어야 함)
 - 쇠고기는 육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, 기타 농수·축산물을 국내산 판매

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사업(공공)

1. 99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설명

(1) 사업내용

- ◆ 축산기자재(자동급수기·급수, 착유기, 파이프라인, 자동환기시설, 케이지, 축산처리기 등) 생산성을 위한 기계설비, 공공시설 및 축산기자재 상설전시장 설치자금

(2) 지원대상: 축산기자재 생산업체

(3) 사업기간: 2개년(98~99년)

- ◆ 업체당 지원규모: 총사업비의 70%이내

- ◆ 지원조건: 연리 8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
2. 2000사업신청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: 시·(협회→시·도로 변경)

나.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: '99년 사업요령과 동일함

다. 사업기간: 2000년(2개년사업→당년도 사업으로 변경)

라.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

- ◆ 업체별 지원규모: 총사업비의 70%이내
- ◆ 지원조건: 연리 8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- 마. 사업담당부서
- ◆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

축산자조금(공공)

1. '99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- ◆ 사업기간: 1년

◆ 사업대상자

-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(한국낙농육우협회, 대한양돈협회, 대한양계협회)

◆ 지원내용

-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
- 축산물 수급 및 소비에 대한 조사 연구
-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

◆ 지원규모

- 협회가 조성한 자조금의 100분지 50%, 범위내 보조지원

나. 사업담당부서

- ◆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, 축산물유통과(02-504-9436~7)

- ◆ 한국낙농육우협회(02-588-7055)

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(공공)

1. 99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(1) 섬유질사료 제조시설

◆ 지원배경

- 반추가축의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

-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,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

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

◆ 지원대상자

- 축협·영농조합법인·협업체 등 생산자단체, 섬유질사료제조업체, 양축농가

◆ 지원단가

- 315백만원(지원단가는 150~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)
- 지원단가는 지원하는 응자금액 기준임

◆ 지원기준

- 시설비의 70% 응자지원

◆ 지원시설의 종류

-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시설비 지원

(2)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

◆ 지원배경

-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함으로써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유도 및 환경오염 방지
-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배합사료의 수입의존도 경감 및 외화절감

◆ 지원대상자: 개소당 300백만원이내(단가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 농가가 결정)

◆ 지원조건

- 응자 70% 이내, 자담 30%이상

◆ 지원시설의 종류

- 기계·기구류: 밸효제조장치, 원료탱크, 콘베어, 교반기 저장로, 금이배관 종류

- 건축: 제조시설 건물, 부대시설창고)등

※ 제조시설이 아닌 발효제조기계등 장비만 구입하는 경우도 가능함

(3) 농가 자가배합사료 제조

◆ 지원배경

- 대부분 농가에서는 배합사료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

- 가축의 생산비중에서 50%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 생산 이용이 필요

※ 배합사료제조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옥수수등 수입사료 원료를 '98. 4월부터 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도 공급가능도록 조

정함.

◆ 지원대상자

- 축협조합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, 양축농가

◆ 지원단가

- 제조시설: 315백만원
- 제조장비: 23백만원(지원단가는 장비의 능력에 따라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)

◆ 지원조건

- 제조시설 및 장비를 70% 응자지원

◆ 지원시설의 종류

- 제조시설: 건물, 기계 및 시설비 지원(부지구입비 제외)

- 제조장비: 분쇄기, 배합기, 발효기,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(건축비는 제외)

나. 사업담당부서

◆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)

학교우유급식사업(공공)

1. 199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◆ 급식신청 자격

- 보조급식: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

- 일반급식: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(초·중·고등학교 등)

◆ 급식대상자 선정

- 보조급식

- 읍·면·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

- 시·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 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

- 일반급식

-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·중·고등학생

나. 사업담당부서

◆ 농림부: 축산국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,

◆ 시·도: 농정국 축산과(시는 농정과)

가축개량기반구축(공공)

1. 시책 및 추진방향

◆ 종축등록

- 종축의 등록, 심사 및 검정사업 확대 추진
-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개량교육·지도 강화
- ◆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
 - 소 수정란 생산·이식 및 가축인공수정기술 교육
 - 가축인공수정기술 향상을 위한 수정사 보수교육
 - 능력검정관련 기술 교육 등

| 구 분 | 92~96년 | 97년 | 98년 | 99년(예산안)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사업량 | 2 | 2 | 2 | 2 |
| 사업비 | 계 | 4,440백만원 | 1,444 | 825 |
| | 보조 | 4,090 | 1,076 | 825 |
| | 운자 지방비 자부담 | 350 | 368 | 535 |

2. 연도별 지원계획

3. '99년도 사업시행요령

1) 사업내용

◆ 종축등록

- 종축등록 회망농가에 대하여 종축(한우, 육우, 젖소)등록, 심사, 검정 및 부대사업 추진

◆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

-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
- 수정란생산·이식기술교육
-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
- 기타 개량총괄기관에서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2) 지원내용

- ◆ 종축등록 : 종축등록 등에 필요한 사업비, 관리비 등 소요자금 중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지원
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
-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비용 등 보조 지원

- ◆ 지원대상 : 한국종축개량협회(종축등록) 축협중앙회(수정란생산·이식, 소 자가인공수정기술, 돼지 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, 기타)가축인공수정사 협회(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)

◆ 지원조건 : 축발기금 보조

-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

- 교육실습용 한우암소(경산우)는 교육생 3명당 1두를 교육개시정까지 축협중앙회장이 구입하여 도지사에게 위탁하고 당년도 최종 교육이 완료된 때에 도지사는 축협중앙회장에게 반환하며 반환된 한우는 축협중앙회장이 판매하여 축발기금에 납입
- 교육회당 15명씩 년 40시간이상(강의 10, 실습 30) 실사하되, 교육담당은 강의의 경우 대학등 외래강사, 실습은 내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
- 교육시기는 효과적인 교육실시 및 성과거양을 위하여 가급적 혹서기 및 혹한기를 피하여 실시
- 축협중앙회장은 도종축장의 교육시작이전에 교제제작배포
- 도별 자가인공수정기술 교육계획 및 소요예산

| 구 분 | 연간교육인원 (명) | 교육회수 (회) | 소요예산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경 기 | 30 | 2 | 14 |
| 강 원 | 45 | 3 | 17 |
| 충 북 | 30 | 2 | 14 |
| 충 남 | 90 | 6 | 27 |
| 전 북 | 30 | 2 | 14 |
| 전 남 | 60 | 4 | 21 |
| 경 북 | 45 | 3 | 17 |
| 경 남 | - | - | - |
| 제 주 | 30 | 2 | 14 |
| 축 협 | | | 5 |
| 계 | 360 | 24 | 143 |

3) 사업비 지원방법

◆ 종축등록

-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

◆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

- 교육비용은 교육예정인원 및 예산단가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을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

나. 사업담당부서

◆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(02-504-9431)

◆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(0417-580-3330)

◆ 시·도 축산과, 도 종축장

◆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(0455-63-8635), 축산경영지원부(02-224-8433)

◆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(02-586-9408)

정책사업부 종자공급요령

〈종자공급원칙〉

- ◆ 종자신청 : 보조사업자가 축협(낙협)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직접 신청
- ◆ 종자공급 : 축협(낙협)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공급
- ◆ 종자대·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축협(낙협)에 납부
- ◆ 정산·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정산

시장·군수

◆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

- 사업대상자(초지조성 및 관리, 사료작물재배) 명단을 축협(낙협)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

※ 한국낙농육우협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-5(TEL 02-588-7055, FAX 584-5144)

◆ 종자신청지도

- 사업대상자가 직접 축협(낙협)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(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)

◆ 종자대 정산

- 농가자담분 :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(낙협)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
- 보조금 : 축협(낙협)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(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)하고 축협중앙회(도지회)에 축발기금 지급 요청

◆ 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2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

축협(낙협), 한국낙농육우협회

- ◆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
- ◆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
- ◆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
- ◆ 종자신청

-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 접수, 단, 축·낙협

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 신청금지

· 이중신청한 경우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

-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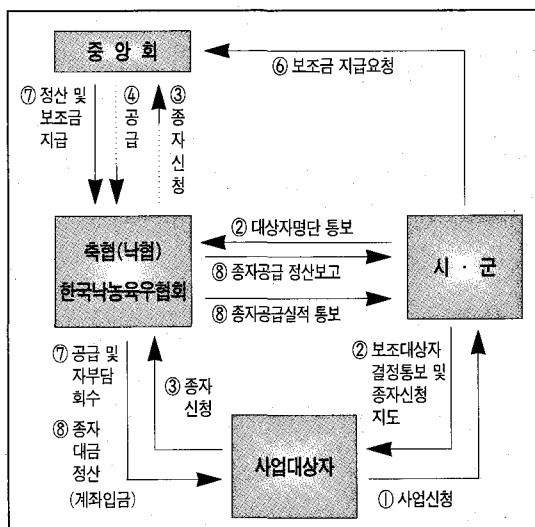
◆ 종자공급

- 축협(낙협)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
-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보고

◆ 종자대정산

- 농가자담분 :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
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중앙회와 보조금 정산
-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정수후 정산가능(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)
- 시장·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

※ 종자공급체계도



주) 1. → 은 축협·낙협만 해당됨

2.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